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및 상환기간 탄력운영 등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융자기간중 거치 년도를 없애면 기업들이 일시 상환할려면 더욱 어렵지 않는지?
- 답 : 일시 상환도 가능하고 균분 상환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기업에는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2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